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457

발의연월일: 2022. 7. 14.

발 의 자 : 윤재옥 • 권성동 • 김상훈

김용판 • 노용호 • 박성민

성일종 • 양금희 • 엄태영

윤창현 · 주호영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,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의 새마을운동 조직이 그 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에대한 특례가 모두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.

새마을운동조직은 지방자치업무를 분담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운영되고 있고, 특히 최근 코로나-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·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.

이에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8조제1

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8조제1항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8조(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	제88조(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
한 감면) ① 「새마을운동 조	한 감면) ①
직육성법」을 적용받는 새마을	
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	
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	
부동산(임대용 부동산은 제외	
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	
대하여는 취득세를, 과세기준일	
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	
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	
세를 각각 <u>2022년 12월 31일</u> 까	<u>2025년 12월 31일</u>
지 면제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